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7년 10.27일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재래시장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주요시설물 편의시설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및 진입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 길이 200m까지 인정)] 관리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내지 제5조
- 인정시장의 인정기준과 구역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내지 제10조
-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내지 제14조
-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9조 내지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7조 내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31) 및 FAX(560-443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1. 법 제3조 제2항 및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 3. 법 제65조 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법 제67조 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 5. 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6. 영 제9조 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 7. 영 제35조 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형태로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향도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채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 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황색 선으로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 기준을 따른다.

②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